

# 제 7 장 주요 신고·재류자격

## 1 주민기본대장

‘주민기본대장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’(2009 년 법률 제 77 호)의 시행에 따라, 2012 년 7 월 9 일(시행일)부터 외국인 분도 주민기본대장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. 따라서 외국인 분도 거주하시는 시·구·정에서 ‘주민표’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.

### ◇◇주민기본대장 제도의 적용 대상자◇◇

일본 국적이 아닌 사람 중 다음 표에 해당된 사람으로, 시·정의 구역 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 대상자로 적용됩니다.

A	<p><b>중장기 재류자(재류카드 교부 대상자)</b></p> <p>재류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외국인으로 3 개월 이하의 재류기간이 결정된 자나 ‘단기체재’, ‘외교’·‘공용’의 재류자격이 결정된 자 등이 아닌 자. 상륙허가·재류자격 변경 허가·재류기간 갱신 허가 등 재류에 관한 허가에 따라 재류카드가 교부됩니다.</p>
B	<p><b>특별영주자</b></p> <p>입관특례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특별영주자. 특별영주자 증명서가 교부됩니다.</p>
C	<p><b>일시비호허가자 또는 가체재허가자</b></p> <p>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으로 난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상륙 허가를 받은 자(일시비호허가자)나 재류자격 미취득 외국인이 난민인정신청을 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킬 때 임시로 일본에 재류하는 것이 허가된 자(가체재허가자). 일시비호허가서 또는 가체재허가서가 교부됩니다.</p>
D	<p><b>출생에 의한 경과체재자 또는 국적 상실에 의한 경과체재자</b></p> <p>출생 또는 일본 국적 상실 등으로 일본에 재류하게 된 외국인.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 일을 한도로 재류자격 없이 재류할 수 있습니다.</p>

자세한 내용은 아래 총무성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[http://www.soumu.go.jp/main\\_sosiki/jichi\\_gyousei/c-gyousei/zairyu/index.html](http://www.soumu.go.jp/main_sosiki/jichi_gyousei/c-gyousei/zairyu/index.html)

문의처

시·구·정 사무소